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9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김성원

이인선 · 조배숙 · 이양수

김기웅 · 이헌승 · 박충권

임이자 • 고동진 • 김도읍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 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 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하 "자원 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 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u>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u>
	<u>운영할 수 있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
	<u>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u>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
	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
	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
	<u>다.</u>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
	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